

문서확인번호



발행번호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전화번호 02)53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2013. 12. 16.



수 신 양○○

발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계 목 불기소이유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2 형제 호
② 고 소 인 성 명	해당사항없음
피의자 (피고소인)	③ 성 명 세라노
	④ 주민등록번호 871109-5*****
⑤ 죄 명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⑥ 처 분 검 사	정○○
⑦ 처 분 년 월 일	2013. 12. 13.
⑧ 처 분 요 지	가-공소권없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지 참조
⑩ 비 고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3. 12. 13.

사건번호 2012년 형제 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정OO은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1. 로드OOO
 2. 베스OOOOOO
 3. 베츠OOO
 4. 보OO
 5. 비커OOOOOOO
 6. 벤자민OOOOOO
 7. 세라노

II. 죄 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III. 주 문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권 없다.

IV.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

1. 피의자 OOOO, OOOOO, OO는 공동하여
2012. 7. 5. 양OO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2. 피의자 OOO, OOO, OOO는 공동하여
2012. 7. 5. 신OO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3. 피의자 OOO, OOOOO, OO은 공동하여
2012. 7. 5. 양OO을 체포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
- 이 사건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사건으로, 2013. 12. 13. 법무부장관이 재판권불행사를 결정하였다(기록 제5권 제1781쪽 미군인범죄사건처리의견승인).
- 공소권 없다.